

신탁계약서 변경대비표

1. 대상투자신탁 : 유리KOSPI2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2. 효력발생일 : 2012년 11월 16일

3. 주요 변경 내용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투자신탁명칭	모자형 변경	유리KOSPI200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유리KOSPI2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제2조(용어의 정의)	모자형 변경에 따른 관련 내용 반영	1~9. (생략) <신설>	1~9. (현행과 같음) 10. "모자형"이라 함은 다른 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제3조(투자신탁의 명칭 및 종류)	모자형 변경에 따른 관련 내용 반영	① 이 투자신탁의 명칭은 "유리KOSPI200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라 한다.	① 이 투자신탁의 명칭은 "유리KOSPI2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라 한다.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5. (생략) <신설>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5. (현행과 같음) 6. 모자형
		③ (생략) <신설>	③ (현행과 같음)
			④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리KOSPI200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제16조(투자목적)	모자형 변경에 따른 기재 내용 변경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모자형 변경에 따른 기재 내용 변경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 중 법 제9조제13항 1호의 유가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제3조제4항의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2.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p>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이 발행한 것 및 법 제9조제13항 1호의 유가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 단, 법 제196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주식"이라 한다)</p> <p>2.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p> <p>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p> <p>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서 만기가 1년 이내이고 신용평가등급이 A3-이상인 것 및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이하 "어음등"이라 한다)</p> <p>5. 법 제9조제14항의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선물,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금리선물, 동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 (이하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p> <p>6. 금리스왑거래</p> <p>7.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189조에 의하</p>	<p>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p> <p>1. 법 시행령 제83조 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p> <p>2. 만기가 1년 이내인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에의 예치</p>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p>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법 제196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이하 "수익증권 등"이라 한다)</p> <p>8.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수익증권 등을 제외한 증권의 대여</p> <p>9. 환매조건부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p> <p>10. 수익증권 등을 제외한 증권의 차입</p> <p>11. 법 시행령 제83조 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p> <p>12. 만기가 1년 이내인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에의 예치</p> <p>13. 법시행령 제268조제3항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p>	
제18조(투자한도)	모자형 변경에 따른 기재 내용 변경	<p>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운용한다.</p> <p>1.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p> <p>2.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p> <p>3. 어음 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p> <p>4.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p> <p>5.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가 되도록 한다</p> <p>6.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도록 한다.</p> <p>7. 수익증권 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하로 한다. 다만,</p>	<p>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운용한다.</p> <p>1. 모두자산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상으로 한다.</p>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p>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p> <p>8. 수익증권 등을 제외한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수익증권 등을 제외한 증권총액의 50%이하로 한다.</p> <p>9.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총액의 50%이하로 한다.</p> <p>10.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한다.</p>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모자형 변경에 따른 기재 내용 변경	<p>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생략)</p> <p>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예금,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p> <p>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의 것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p>	<p>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현행과 같음)</p> <p>2~7. (삭제)</p>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p>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p> <p>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p> <p>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4.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p>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p>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5. 주식 및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6.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법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법시행령 제86조제2항에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한 증권예탁증권 및 법시행령 제86조제3항에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행위</p> <p>7.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p>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모자형 변경에 따른 기재 내용 변경	<p>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p>②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p>	<p>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p>② ~ ③ (삭제)</p>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p>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시행령 제8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9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p> <p>③ 제19조제2호 본문 및 제4호 및 5호의 투자비율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제25조의2(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모자형 변경에 따른 관련 내용 반영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6조의2(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모자형 변경에 따른 관련 내용 반영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모자형 변경에 따른 관련 내용 반영	<p>① (생략)</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 게시하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p> <p>③~④ (생략)</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포함)을 매일 공고· 게시하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p> <p>③~④ (현행과 같음)</p>
제37조(수익자총회)	모자형 변경에 따른	①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	①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관련 내용 반영	총회는 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는 법령(또는 신탁계약) 및 모두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②~⑩ (생략)	②~⑩ (현행과 같음)
		<신설>	⑪ 모두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두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두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3조(신탁계약의 변경)	모자형 변경에 따른 관련 내용 반영	①~③ (생략) ④ 수익자는 제2항에 따른 공시일부터 1월 이내에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1조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수익자는 제2항에 따른 공시일(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부터 1월 이내에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1조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
제4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① (생략) ②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5.(생략) <신설>	① (현행과 같음) ②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5.(현행과 같음) 6. 법 시행령 제245조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50조(공시 및 보고)	- 법 개정사항 반영	① (생략)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공시(이하 "수시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2~5.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발생한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공시(이하 "수시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서)	-	③~④ (생략)	한다) 2~5. (현행과 같음)
	모자형 변경에 따른 관련 내용 반영	<p>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 생략)</p> <p>⑥ 신탁업자는 법 제90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 따른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수익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p> <p>2.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p>	<p>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 현행과 같음)</p> <p>⑥ 신탁업자는 법 제90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 따른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제5항 단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54조(관할법원)	자구정정	<p>① (생략)</p> <p>②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3</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p>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호에 따른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부칙 (시행일)		<신설>	이 신탁계약은 2012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1. 대상투자신탁 : 유리KOSPI2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2. 변경 시행일 : 2012년 11월 16일

3. 주요 변경내용 :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모자형 변경	<추가>	모자형 (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최근내용 갱신	<추가>	2010.09.03 결산갱신 2011.10.07 결산갱신에 따른 업데이트 등
4. 집합투자업자	신주소 갱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2 9F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7
5. 운용전문인력	기업공시서식 변경 반영 및 데이터갱신	-	- 부책임운용인력 기재 - 최근일 갱신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모자형 변경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주식-파생형) 투자신탁, 종류형, 개방형, 추가형 [정정 전 1] 나. (생략) 다. <신설>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주식-파생형) 투자신탁, 종류형, 개방형, 추가형, 모자형 [정정 후 1] 나. (현행과 같음) 다. 모자형 구조 [정정 후 2]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모자형 변경에 따른 기재내용 변경	이 투자신탁은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관련파생상품으로 KOSPI200 (목표주가지수)에 근접한 수익률을 추구하되 제한적 범위 내에서 KOSPI200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통해 자본이득 등을 추구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모 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KOSPI200 (목표주가지수)에 근접한 수익률을 추구하되 제한적 범위 내에서 KOSPI200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통해 자본이득 등을 추구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모자형 변경에 따른 기재내용 변경	가. 투자대상 [정정 전 3] 나. 투자제한	가. 투자대상 [정정 후 3] 나. 투자제한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정정 전 4]	[정정 후 4]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모자형 변경에 따른 기재내용 변경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이 투자신탁에 관한 내용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유리KOSPI200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에 투자하여 운용합니다. 유리KOSPI200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은 국내 주식 및 주식관련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여 KOSPI200 지수와 유사한 수준의 수익을 추구합니다. (2) 모투자신탁에 관한 내용 - 기존 내용 기재. 다만, 일부 자구 정정 내용은 아래 [정정 후 5] 참조
		나. 수익구조 -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이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인 "유리KOSPI200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수익증권에 대부분을 투자하므로 이러한 모투자신탁의 수익구조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비율만큼 당해 투자신탁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 모투자신탁의 수익구조 - 기존 내용 기재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위험	모자형 변경에 따른 기재내용 변경	다음의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으로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은 자산의 대부분을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므로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으로 이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으로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그 시세가 항상 변동하여 높은 위험을 지니는 투자대상인 주식에 신탁재산의 대부분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그 시세가 항상 변동하여 높은 위험을 지니는 투자대상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급격한 시세변동에 노출되고 큰 규모의 손실 발생 가능성을 지니므로 유리자산운용(주)은 이 투자신탁을 5등급 중 위험이 높은 수준인 2등급 (높은 위험)으로 분류합니다.	인 주식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급격한 시세변동에 노출되고 큰 규모의 손실 발생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유리자산운용(주)은 이 투자신탁을 5등급 중 위험이 높은 수준인 2등급 (높은 위험)으로 분류합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결산 갱신	결산 전 자료	최근 내용 반영 (직전회계기간 : 2011.08.28~2012.08.27)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결산 갱신	결산 전 자료	최근 결산내용 반영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결산 갱신	과거 데이터	최근 내용 반영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결산 갱신	과거 데이터	최근 회계기간 종료일 기준 갱신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결산 갱신	가. 회사개요 -	가. 회사개요 - 이해관계인 : 판매회사 중 부국증권주식회사는 집합투자인 유리자산운용주식회사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정정 전 4] 라. 운용자산규모 과거 데이터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정정 후 6] 라. 운용자산규모 최근 내용 갱신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임의해지시 공시 방법 기재	가. 의무해지 -	가. 의무해지 소규모펀드 임의해지시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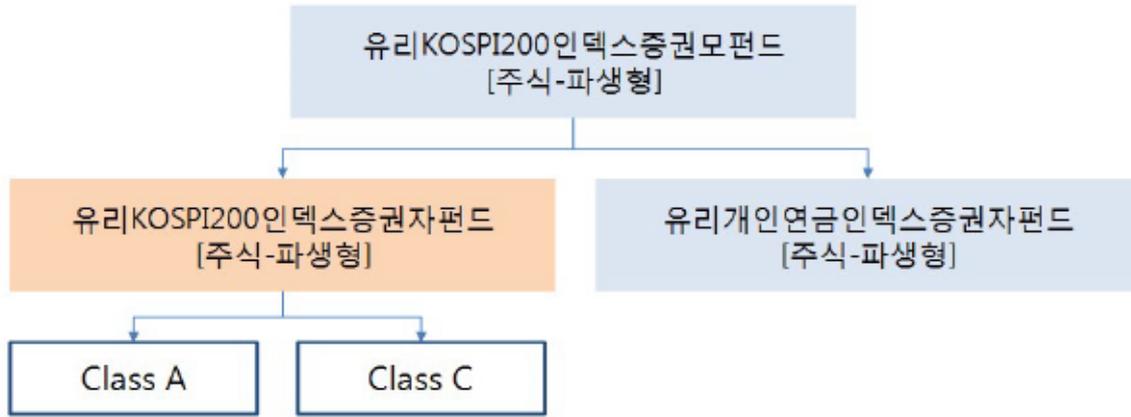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사항		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법 개정사항 반영	나. 수시공시 (2) 수시 공시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합니다)

[정정 전 1]



이전-종류형

[정정 후 1]



구조

[정정 후 2]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집합투자신탁 내의 다른 모 또는 자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유리KOSPI200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 (주식-파생형)
유리KOSPI2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상
유리개인연금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상

유리KOSPI200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주요 내용

구분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주요투자대상	주식 60% 이상, 채권 40% 미만 등
투자목적	주식 및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여 KOSPI200 지수와 유사한 수익률을 추구하며 일부 초과 수익 추구
주요투자전략	KOSPI200 인덱스 복제 전략 및 일부 초과수익 전략 수행

[정정 전 3]

구분	투자비중	세부내용
(1) 주식	60% 이상 (다만, 국내주식 60% 이상)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 중 법 제9조제13항 1호의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이 발행한 것 및 법 제9조제13항 1호의 유가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합니다.) 단, 법 제196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제외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60% 이상
(2) 채권	40%이하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습니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제외합니다)
(3) 어음등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서 만기가 1년 이내이고 신용평가등급이 A3-이상인 것 및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4) 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5) 금리스왑 거래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100%이하	
(6) 장내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	법 제9조제14항의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선물,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 옵션
(7) 수익증권 등	5%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189조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법 제196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
(8) 증권 대여	수익증권등을 제외한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수익증권등을 제외한 증권총액의 50%이하	
(9)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50%이하	
(10) 증권차입	수익증권등을 제외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11) 고유재산 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2) 단기대출	법 시행령 제83조 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	

(13) 금융기관 예의 예치	만기가 1년 이내인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에의 예치
<p>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5)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p> <p>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 등으로 (1)~(5)의 투자비율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p>	

[정정 후 3]

(1)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구분	투자비중	세부내용
유리KOSPI200인덱스증권 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90% 이상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주식 및 주식관련 장내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고유재산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p>다만,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1) 상기 투자비율은 투자자산별 투자금액(파생상품의 경우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 평가액 적용)이 투자신탁 자산총액(파생상품의 경우 상품별로 달리 적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합니다.

주2) 투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신탁계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

구분	투자비중	세부내용
주식	60% 이상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 중 법 제9조제13항 1호의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이 발행한 것 및 법 제9조제13항 1호의 유가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합니다.) 단, 법 제196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제외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

채권	40% 미만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습니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제외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40% 미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어음등	40% 미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서 만기가1년 이내이고 신용평가등급이A3-이상인 것 및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주식및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 10% 이하	법 제9조제14항의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선물,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 옵션
금리스왑거래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100%이하	
수익증권 등	5%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189조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법 제196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
증권의 대여	수익증권등을 제외한 증권 of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수익증권등을 제외한 증권총액의 50% 이하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50% 이하	
증권의 차입	수익증권등을 제외한 증권 of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고유재산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p>다만,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에의 예치 		
<p>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신탁계약서 제18조제1호 내지 제5호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p>		

-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
-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
-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 등으로 신탁계약서 제18조제1호 내지 제5호를위반하게 되는 경우

주) 상기 투자비율은 별도의 기재가 없는 경우 투자자산별 투자금액(파생상품의 경우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적용)이 투자신탁 자산총액(파생상품의 경우 상품별로 달리 적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합니다.

[정정 전 4]

투자대상의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는 제외한다)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시행령 제83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동일종목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예금,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봄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 자산총액의 10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 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투자대상의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p>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에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p> <p>○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 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p>	
동일법인 발행 지분증권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투자	<p>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계열회사 발행 지분증권 투자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법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법시행령 제86조제2항에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한 증권예탁증권 및 법시행령 제86조제3항에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행위	
후순위채권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투자한도 초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시행령 제8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신탁계약	

투자대상의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서 제18조제5호 내지 제10호, 제19조제2호 내비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정정 후 4]

(1) 이 투자신탁의 투자제한

투자대상의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는 제외한다)과 투자신탁자산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시행령 제83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주)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신탁계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제한

투자대상의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는 제외한다)과 투자신탁자산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시행령 제83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동일종목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예금,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에탁증권을 포함)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투자대상의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p>로 봄</p> <p>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총액의 10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 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 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에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 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
동일법인 발행 지분증권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투자	<p>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투자대상의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계열회사 발행 지분증권 투자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법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법시행령 제86조제2항에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한 증권예탁증권 및 법시행령 제86조제3항에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행위	-
후순위채권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투자한도 초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시행령 제8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서 제18조제5호 내지 제10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

[정정 후 5]

정정 전	정정 후
<p>○ 초과수익 추구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상황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일정 수준 비교지수와 다르게 구성하여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 기업의 인수, 합병, 실적 모멘텀 등 이벤트를 활용한 종목별 대응으로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 주식 및 파생상품간 스왑 거래 및 파생상품간의 스왑거래를 활용하여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 스프레드 매매 및 장단기 시장흐름에 따른 비중조절을 통해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p>○ 초과수익추구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은 시장 상황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일정 수준 비교지수와 다르게 구성하여 초과수익을 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초과 수익 달성을 위해 스왑거래, 이벤트를 활용한 종목별 매매, 스프레드 매매 및 장단기 시장흐름에 따른 비중조절 등 다양한 초과수익 추구 전략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

1. 대상투자신탁 : 유리KOSPI2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2. 변경 시행일 : 2012년 11월 16일
3. 주요 변경내용 :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5. 투자운용인력	개정 서식 반영	-	부책임용인력 기재 운용현황 업데이트
6. 투자실적추이	결산 갱신	-	연평균수익률 삭제 연도별수익률 업데이트
II. 매입·환매 관련 정보			
1. 보수 및 수수료	결산갱신	결산 전 데이터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직전 회계기간 2011.08.28~ 2012.08.27] 업데이트
III. 요약 재무정보			
-	결산갱신	-	2012.08.27 현재 업데이트